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# 광주지방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고단6593 판결 공무집행방해,업무방해,재물손괴,모욕

광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건 2020고단6593 공무집행방해, 업무방해, 재물손괴, 모욕

피고인 A

검사 김지혜(기소), 정미란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박홍기(국선)

판결선고 2021. 5. 7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.

이 유

## 범죄사실

피고인은 2018. 5. 30.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, 2018. 11. 9.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. 9. 13.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.

# 1. 업무방해

피고인은 2020. 12. 17. 21:0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(남, 52세)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'마스크를 벗어봐라, 얼굴을 보자, 왜 돌아왔느냐,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'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'너 이리와'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,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.

### 2. 공무집행방해

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,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,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.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## 3. 재물손괴

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면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,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,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.

### 4. 모욕

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F (남, 46세)에게 택시기사 C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'야이 씨발놈아, 왜 내가 내려야 되냐,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, 야, 씨발놈들아, 왜 택시기사를 도망가게 하느냐'라고 욕설을 하여,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E. F.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파손된 안경 사진
- 1. 판시 누범 전과 :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, 개인별 수용현황, 판결문 2부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14조 제1항(업무방해의 점), 형법 제136조 제1항(공무집행방해의 점), 형법 제366조(재물손괴의 점), 형법 제311조(모욕의 점), 각 징역형 선택

1. 누범가중

형법 제35조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양형의 이유

피고인은 업무방해, 폭행, 상해, 공무집행방해,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, 최근에는 판시 누범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,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. 또한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,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.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.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,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손괴된 재물이 아주 고가는 아닌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수단과 방법,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.

# 판사 박민우